[서식 예] 반소장(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)



반 소 장

사 건 2000가단0000 건물인도

피고(반소원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원고(반소피고)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.

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반소청구취지

- 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

반 소 청 구 원 인

- 1.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.
- 2.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.

- 3. 그러나 피고는 소외 ◈◈◈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제 역 20○○. 5. 5.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, 소외 ◈◈◈는 20○○. 5. 11. 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피고는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○○. 5. 8.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4. 그러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법보호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을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반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반소원고(본소피고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	보스 게소범의 제출 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민/학생
제출법원	본소 계속법원 제 출 기 간 송법 제269조 제1항)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제출부수	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
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※ 아래(1)참조
 비 용	단,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
	의 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)
	·송달료 : ㅇㅇㅇ원(r==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	·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
	데(민사소송법 제271조),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
	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
	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
	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,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
	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,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
	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(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298 판결).
	·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
	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, 상대방이 이의를
	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
	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(민사소송법 제412조).
	·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, 반
	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
기 타	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
	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
	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
	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
	하여야 할 것임(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6708 판결).
	·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
	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
	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, 사실심 변
	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
	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
	있는 공사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
	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
	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
	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함(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3370 판결).
	[45. 권포 4004덕45570 권설).



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